

제 호

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·주유소·용제판매소  
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·부생연료유판매소)등록증

1. 성명(대표자) : 주민등록번호 : -

2. 상 호 :

3. 소 재 지 :

4. 취 급 유 종 :

5. 구 분 설 치 : 저장시설의 수 : 주유기의 수 :

(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로서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 
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

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음을  
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인